사업방법서 별지

(글로벌케어보험)

1. 보험의 종류

특종(상해)/여행/해외장기체류자

2.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

가. 동산 또는 부동산
나. 법률상 배상책임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체

3.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다.

5.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1)적용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및 추가 특별약관에 대하여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2)보험료할인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해당 특약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함.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 다른 보험료할인과의

합계액이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예정사업비 한도로 할인을 적용함.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외 기타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약에 한해서만 판매한다.

1) 보험업법 제83조(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제1항 4호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을 판매자로 하고, 동시에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첨부한 계약

2)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첨부하고, 동시에 아래의 조건마다 각호의 1을 만족하는 계약

- 계 약 자 : ① 관광진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국외여행업자
②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① 상기 여행업자가 알선, 주최한 해외여행자
② 국제협력 업무수행 사업자가 파견하는 해외여행자 또는 초청 연수생

다.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 운용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이며,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한다.

라. 회사는 단체급특별약관에 의하여 집금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집금하여 회사에 납입한 보험계약 보험료의 3%를 집금사무비로 집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일시납계약 보험료 및 분납계약의 초회보험료는 제외한다.

마. 납입주기 : 일시납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바. 단체급특별약관의「단체급보험계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는 별첨과 같다.

사.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적용근거 :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 적용범위 :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기타
  1)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아. 실손의료비 보장종목 분리 판매에 관한 사항

- 단체보험, 여행보험 및 중복가입, 병력 등의 사유로 일부 보장종목만 가입가능한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보장종목을 분리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상해급여형과 상해비급여형, 질병급여형과 질병비급여형은 함께 판매한다.

자. 실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구 분	보험종목		보험가입금액 한도
기본형	상해급여		5천만원 이내
	질병급여		5천만원 이내
특약형	상해비급여		5천만원 이내
	질병비급여		5천만원 이내
	3대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350만원 이내
		주사료	250만원 이내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이내

차. "업무외사망보험수익자지정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약부가 대상 : 단체보험 계약(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한 계약 포함) 중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계약
- 사망보험금의 청구 : 이 특약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청 구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확인서(<별첨1> 및 <별첨2> 참조)를 제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기 타 :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사실 및 기업 단체보험의 근로자 사망보험금 관련 판례의 주요내용(<별첨3> 참조)을 보험가입시 안내한다.

단체급보험계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_____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_____ 소속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도입된 단체급보험계약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협약 당사자)

이 협약체결의 편의를 위하여 협약당사자인 _____을 "갑"이라 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을"이라 한다.

제2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단체급보험계약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갑과 을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관련업무를 일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단체급보험계약의 개념)

①단체급보험계약은 최초 가입시 갑의 소속원이 보험계약자이고, 을이 보험자인 단체급특별약관이 첨부된 보험계약을 말한다.
②소속원이란 갑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소속원은 협약기간중 1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이 협약은 단체급보험계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을이 인수하는 모든 단체급보험계약에 대한 갑과 을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이 협약에서 적용되는 을의 보험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체급보험계약을 위한 을의 단체급특약이 첨부된 신보험상품이 출시되면 자동으로 추가된다.

1.상해보험
2.골프보험
3.애니홈종합보험
4.해외여행보험
5.글로벌케어보험
6.국내여행보험

제5조(단체급보험계약의 체결)
이 협약서의 협약기간 동안 을은 갑의 소속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단체급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협약기간은 20XX년 X월 X일 0시부터 20XX년 X월 X일 24시까지 2년으로 한다.

제7조(갑의 업무)
①갑은 이 협약에 의한 단체급보험계약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험료 납입방법이 분납인 경우 초회보험료를 제외한 제2회 이후 분납보험료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보험계약을 맺은 다음 달 이후 보험계약자인 소속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최초 급여지급일 및 그 이후 매월 급여지급일에 급여에서 공제한다.
   나.가목에 따른 급여의 공제는 근로자의 요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에 의해서 가능하다.
   다.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는 급여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을이 지정하는 곳에 납입한다.
   라.갑이 가목에 따른 급여의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을에게 직접 납입(자동이체에 한함)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보험계약자의 미납입보험료의 징수에 협력한다.
   가.당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중단된 때
   나.당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급여공제를 거부한 때
   다.기타의 사유로 당해 보험계약자에 대해 제1호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때
3.갑의 소속원이 10인 미만으로 감소한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한다.
4.을의 요청에 따라 단체급 보험계약자가 갑의 소속원인지 여부를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통지한다.
5.기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을이 요청하는 업무

②제1항 제1호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___일로 한다.

제8조(을의 업무)

을은 이 협약에 의한 단체급보험계약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을은 제7조(갑의 업무)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갑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매월 영수한 합계금액에 대한 보험료 영수증을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발행한다.

2.을은 제7조(갑의 업무)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서 갑이 납입한 금액에 아래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집금사무비로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한다. 단체급보험상품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아래의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상해보험 (3)%

나.골프보험 (3)%

다.애니홈종합보험 (3)%

라.해외여행보험 (3)%

마.글로벌케어보험 (3)%

바.국내여행보험 (3)%

3.기타 이 협약과 관련하여 갑이 요청하는 업무

제9조(업무과실의 경우 업무처리)

①갑과 을은 제7조(갑의 업무) 제1항 또는 제8조(을의 업무)의 업무과정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갑과 을의 업무담당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 부주의, 착오로 인하여 해당 업무처리 금액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즉시 정상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제10조(관련자료 제출)

①갑과 을은 상호간의 업무에 관한 해당자료 및 기타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갑과 을은 상호간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과 해지)
①갑과 을은 쌍방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의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
②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통보로써 이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2.갑과 또는 을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위반 또는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갑 또는 을이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4.을의 보험금 지급불능 위험 등 부득이한 해지사유가 있을 때
5.갑의 소속원이 10인 미만으로 감소한 때
④갑과 을은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갑 또는 을이 파산한 경우에는 상호간의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이 협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12조(해지 후 업무처리)
이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은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청산하고, 신속히 남은 업무를 정리한다.

제13조(성실이행)
①갑과 을은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주의로 인한 오기 및 탈루를 이유로 쌍방의 권리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갑과 을은 이를 발견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①이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한 협의로써 결정한다
②쌍방의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은 법의 일반원칙 및 상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업무협약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연장)
이 협약은 제6조(협약기간)에 따라 종료한다. 다만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2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보험약관에 따른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협약 당사자가 이에 기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갑 (인)

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 (인)

< 별첨 1 >

업무상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확인서

[회사제출용]

법정상속인 (　　)은 아래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table>
<tr><td>상품명 및 계약일자</td><td colspan="3"></td></tr>
<tr><td>보험계약자</td><td></td><td>피보험자</td><td></td></tr>
<tr><td>업무상 사망 보험수익자</td><td>보험계약자</td><td>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td><td>법정상속인</td></tr>
<tr><td rowspan="10">업무상 사망 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

※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td><td colspan="2">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7조)</td><td>□</td></tr>
<tr><td colspan="2">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제28조)</td><td>□</td></tr>
<tr><td colspan="2">행사 중의 사고(제30조)</td><td>□</td></tr>
<tr><td colspan="2">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제31조)</td><td>□</td></tr>
<tr><td colspan="2">요양 중의 사고(제32조)</td><td>□</td></tr>
<tr><td colspan="2">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제33조)</td><td>□</td></tr>
<tr><td colspan="2">업무상 질병(제34조)</td><td>□</td></tr>
<tr><td colspan="2">출퇴근 중의 사고(제35조)</td><td>□</td></tr>
<tr><td colspan="2">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제36조)</td><td>□</td></tr>
<tr><td>지급보험금(예상)</td><td colspan="2">원</td><td></td></tr>
</table>

[보험계약 내용 및 업무상 사망 원인]

※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상 상해와 업무상(외) 사망은 상이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 및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고(故) _____님의 사망보험금이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상 사망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인 서명을 기재하여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오니 해당보험금을 업무상 사망 보험수익자인 _____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인]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 첨부 :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구)제적등본

< 별첨 2 >

업무외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확인서

[회사제출용]

법정상속인 (　　)은 아래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상품명 및 계약일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업무상 사망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업무외 사망 원인 ※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사고원인을 기재바랍니다)		
지급보험금(예상)	원		

[보험계약 내용 및 업무외 사망 원인]

※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상 상해와 업무상(외) 사망은 상이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 및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고(故) _____님의 사망보험금이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인 서명을 기재하여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법정상속인]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 첨부 :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구)제적등본

< 별첨 3 >

업무외사망보험수익자지정 특별약관 주요내용 확인서

[회사제출용]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수익자 결정 및 사망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험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험계약자 자필기재)** 으로 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70285

◆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보험사제출용) 등 업무상의 재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으로 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은 되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외 사망'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망' 및 '업무외 사망'의 구분에 대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업무상 사망'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 특약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확인서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가 업무외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리고 계약자를 통하여 "업무외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상 상해와 업무상(외) 사망은 상이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 및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단체명 : _____(거래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_____